



1-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■ 지원규모

- 경영안정자금 (1,600억원 - 상·하반기 각각 800억)
- 시설자금 (100억원 - 연간한도)

■ 지원대상

-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(사업)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로서
 -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체
 -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
(소기업: 공장 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장'인 기업이며,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)

※ 지원제외업체

-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(사업) 실적이 없는 업체
-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(단, 공장 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으로 건축물 관리대상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장'인 업체는 제외)
-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
(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)
-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
-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
(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)
- 자금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
- 지방세 체납 업체

■ 지원범위

【경영안정자금】

- 기술개발,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
- 원·부자재 구입, 임금 지불 등
- 대출자금(기존 고금리 대출상환)
-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
【시설자금】

- 공장의 신축, 증·개축 소요 자금
-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·장치 구입 소요 자금
-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

■ 지원조건

○ 용자한도액

매출액	3억 미만	3 ~ 6억 미만	6 ~ 10억 미만	10 ~ 20억 미만	20억 이상
지원한도	1억	1.5억	2억	3억	5억

※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. (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 원, 시설자금 최대 3억 원)

○ 용자기간 : 2년 거치 일시상환

○ 대출금리 :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

○ 이차보전율 : 경영안정자금 2.5%, 시설자금 2%

☞ 우대금리 0.5%적용: 김해형 강소기업, 김해시일자리우수기업 선정업체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창업 2년미만 기업, 김해 무역인상 수상기업, 김해시 기업 R&D 챌린지 수상기업, 기술혁신형 선도기업

○ 취급금융기관 : 김해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

■ 접수방법

○ 인터넷 접수 ※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인증절차, 제출서류 파일업로드

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(<https://www.gimhae.go.kr/bizmoney.web>)

■ 제출서류

[필수서류]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
(제품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,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으로 제출. 단,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지원한도 1억원으로 제한)
-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
-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
-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

[선택서류]

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임차공장인 경우)
-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[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(김해시 발급), 김해형 강소기업 인증서(김해시 발급), 여성기업 확인서(중기부 발급), 장애인기업 확인서(중기부 발급), 창업2년미만기업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이력포함, 세무서 발급), 김해 무역인상(수출유공탑 또는 표창장, 김해시 발급) 김해 기업 R&D챌린지 수상 기업(협약서, 김해시 발급), 기술혁신형 선도기업(인증서, 김해시 발급)]

[시설자금 추가서류]

- 공장건축 : 건축허가(신고)서 사본 1부, 건축계약서, 설계내역서, 평면도 사본 등 각 1부
- 기계설비 : 매매계약서 (외국산일 경우 오퍼사이트) 사본 1부,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(설계도면) 1부



1-2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

■ 지원규모

- 10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창업기업
 - 예비창업기업
 -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
- 용자조건 : 용자한도 2억, 2년 거치 일시상환, 이차보전을 2%

※ 지원제외업체

-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(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)
-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
- 우리시 경영안정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(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)
- 자금 신청일 현재 휴 · 폐업 중인 업체
- 지방세 체납 업체

■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

-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 검증 후 자금 지원
-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결과 용자추천 가능 금액만큼 추천
-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, 창원지점, 부산지점
- 처리절차



문의

김해시 기업혁신과 기업혁신팀 (☎055-330-3446),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(☎055-330-2100)

① 1-3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
■ 지원규모

- 1천만원

■ 지원대상

- 김해시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 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기업체로서
 - 상시 근로자수(4대 보험료 납부 기준) 10인 미만이고
 - 제조시설면적 500㎡미만인 제조업체

■ 지원조건

- 지원한도 : 신용보증 수수료 납부금액의 50%, 100만원 이내
- 지원회수 : 1회(경영자금 또는 시설자금 중 1회)

■ 신청서류

-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신청서 1부
- 대출은행 실행 확인서 1부
-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영수증
-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국민연금납부증명서,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
- 고용보험가입자 목록(고용노동부 발행) 1부
- 업체 통장 사본 1부

문의

김해시 기업혁신과 기업혁신팀 (☎055-330-3446),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(☎055-330-3119)



1-4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

■ 지원규모

- 550억원(상반기 275억원, 하반기 275억원)

■ 지원대상

-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
※ 소상공인의 정의

- 창업자금 : 가게 증·개축,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
 -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(신규창업시)
- 경영안정자금 :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
 -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
■ 대출구분

구분	대상
보증대출	경남신용보증재단(김해지점)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담보대출	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
신용대출	금융기관에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

■ 지원조건 및 내용

	구분		응자한도	지원내용	상환방법
1	이자 (이자차액) 보전	창업자금	5천만원	2년간 연 2.5% 이자보전	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~3년 분할상환
		경영안정 자금			

	구분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2	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	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분	최초 1년분의 50% (6개월분)	신용보증서 발급 후 8~10개월 경과 후 지급

문의

김해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(☎055-330-3418)